Ⅱ 금융투자상품 거래, 무엇이 궁금하세요?

1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은행의 예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됩니다.

☞ 예금과 보험상품 중에는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예금 · 보험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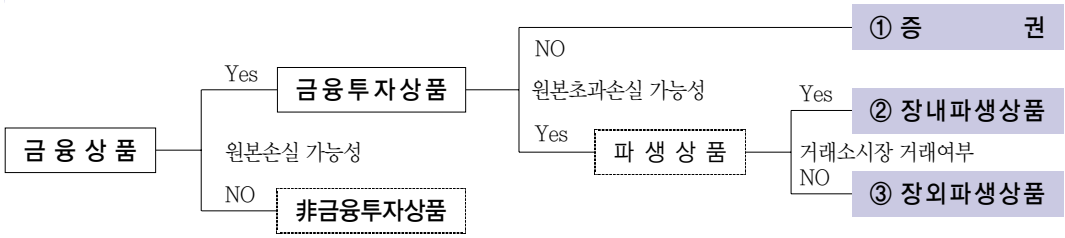
◉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투자원본의 손실 또는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투자손실에 대해 국가는 물론 거래 금융회사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에 반해 은행의 예금과 보험상품은 각각 은행,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나 보상을 받고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 일정부분 지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 증권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권의 종류

증권의 종류	개 념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상기 5종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 펀드 수익증권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주식은 집합투자증권으로 정의

◉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계약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 파생상품은 KOSPI 200 지수선물, KOSPI 200 지수옵션, 개별주식 선물 · 옵션 등과 같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선도거래 등과 같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파생상품의 종류

기초자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선 물	옵 션	선 도	스 왑	옵 션
금리	• 국채금리선물 (3년, 5년, 10년) • 통안증권선물	–	• 금리선도거래 (FRA)	• 이자율스왑 (IRS)	• 이자율캡 • 이자율칼라
통화	• 미국달러선물 • 일본엔선물 • 유로선물	• 미국달러옵션	• 통화선도거래 (Currency Forward)	• 통화스왑 (CRS)	• 통화옵션
주식	• KOSPI200선물 • 개별주식선물 • 스타지수선물	• KOSPI200옵션 • 개별주식옵션	• 주식선도	• 주식스왑	• 주식옵션
상품	• 금선물 • 돈육선물	–	–	–	–
신용	–	–	–	• 신용스왑(CDS)	• 신용옵션(CO)

* 개별주식워런트증권(ELW)은 옵션의 일종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파생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투자자가 취득시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추가 지급의무(원본초과손실 가능성)가 없고 주가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증권(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함

2 어떤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주식, 채권 등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해 주는 영업은 투자중개업, 투자자와 직접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영업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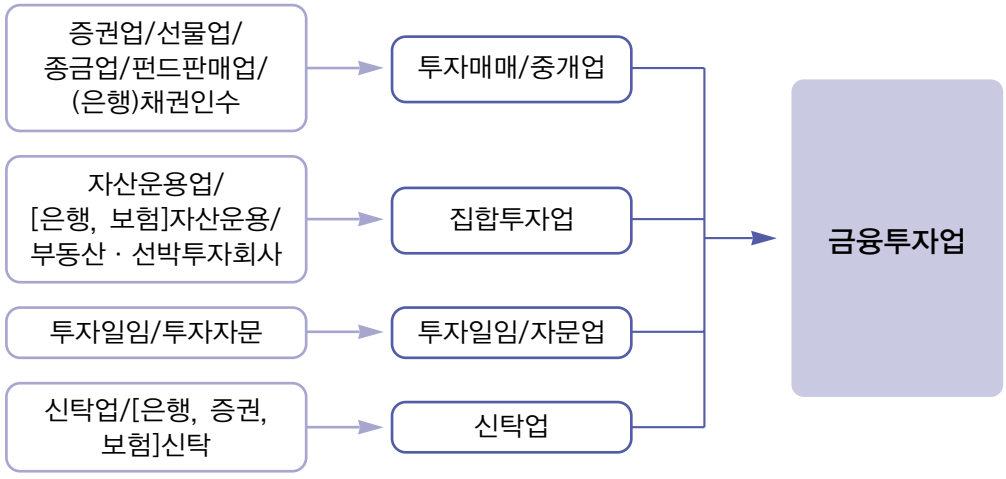
☞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은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용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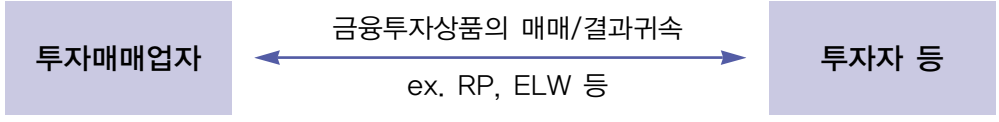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업	개 념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 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와 매도 · 매수하거나 그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 ·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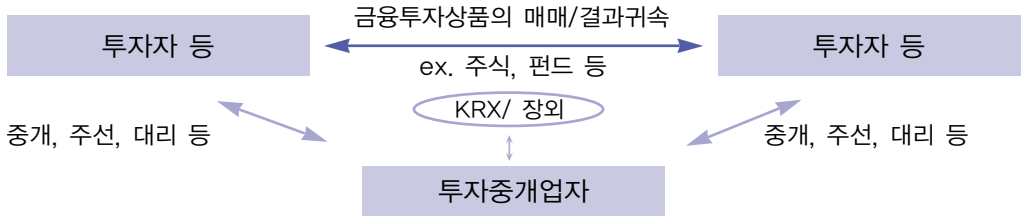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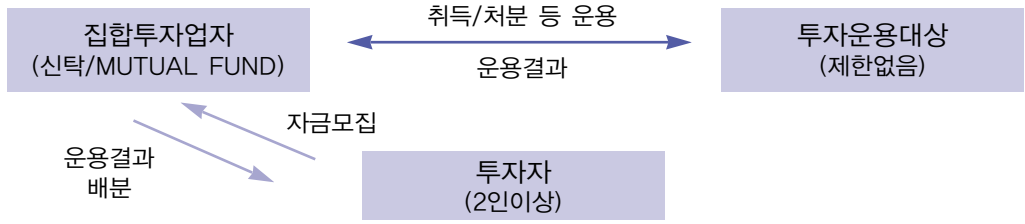
① 투자매매업



② 투자중개업



③ 집합투자업



④ 투자일임 · 자문업



◉ 금융투자업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주로 영위하나 은행에서 채권과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 등록을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겸영금융투자업자)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펀드판매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등)의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금융투자업)에 해당하나 현재 증권회사 뿐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도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따라서 자신이 거래할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그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취급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그리고 거래 가능한 투자자의 종류 등에 따라 영업범위가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거래회사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甲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고, 乙 증권회사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甲 증권회사의 영업범위 예시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거래가능한 투자자의 종류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파생상품(장내 · 장외)	전문투자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회사 등 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 · 시행령에서 열거한 자임

○ 따라서 거래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 본인이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 증권과 KOSPI 200 지수선물 · 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통화, 금리 등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은 일부 증권회사에서만 영위

○ 또한, 거래회사를 선택하기 전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여부,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여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여 거래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보고서, 경영공시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비교공시하고 있음

3 투자권유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투자권유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품설명,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상담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에 대한 권유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투자광고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사실을 알리거나 증권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청약의 권유와 구분됩니다.

투자권유 · 투자광고 · 청약의 권유의 개념

구 분	개 념
투자권유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투자광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서 알리는 것
청약의 권유	증권을 취득토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 안내문,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권유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알기의무) 먼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에 앞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인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금융투자회사는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기초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확인절차) 금융투자회사는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투자자 정보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설명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규제내용

투자권유규제	내 용
고객알기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투자권유前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의 투자자정보 확인, 유지, 관리 의무
적합성원칙(Suitability)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투자권유 의무
설명의무 (Product Guidance)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투자권유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투자권유준칙 제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준투자권유준칙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금융투자회사가 제정한 투자권유준칙은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는 동 준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투자자 정보 확인 및 투자자 성향 분류 등의 절차는 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으나,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투자의 적합성 여부는 주관성이 개입되게 마련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투자자의 성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성향 등의 파악이 없으면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 합리적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자 여러분들도 투자권유를 받을 때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제반 투자권유 방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권유를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은 끝까지 확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구하는 투자자 정보 및 금융

상품 설명내용에 관한 투자자 확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확인 서류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알기의무,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사후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경우 회사의 법규 위반 등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투자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투자권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투자권유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과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은 투자권유대행인만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고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을 말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회사를 대신해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종전의 투자상담사와 그 기능이 유사하나 자율적으로 운영된 투자상담사 제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전문인력시험(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에 합격한 자 또는 보험설계사(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대행만 가능)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자입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신이 계약을 맺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그리고 자신은 계약을 직접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제반사항을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불법으로

투자권유대행인 행세를 할 수 있어 투자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투자자 여러분은 의심되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투자권유 외에 계좌개설, 투자자 실명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에서 상주하는 고객 중에 간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등 영업점에는 소속직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특정인의 직원사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점장 등에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직원을 사칭한 자의 투자권유에 따른 손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렵고 결국 그 손해를 고스란히 투자자 자신이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투자설명을 알아듣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요?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손실위험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했음을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고객알기의무,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본결손액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설명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혹은 매도권유를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지나치게 과거의 주가차트분석이나 풍문 등에 의존하는 경우

○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데도 고위험의 파생상품 펀드나 관리종목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는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투자목적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에 비하여 과도한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6 부당한 투자권유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회사가 이러한 이익보장 및 손실보전 약정을 하였을 경우 동 약정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급받은 이익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미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융투자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이익보장이나 손실보전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권유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이 시세조종중이니 지금 당장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권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 행위"로서 이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투자경험이 짧은 투자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밖에도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투자자의 요청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자권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됩니다.

○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한편,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고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를 '임의매매'라고 합니다.

○ 임의매매는 금융투자회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없이 유가증권 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매매거래의 결과도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매매를 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임의매매의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할 경우는 회사에 대하여 거래를 승인하여 매매결과에 따른 이익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주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의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결과에 대해 수용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의매매 행위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투자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투자자가 이러한 임의매매를 승인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임의매수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의매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칫 임의매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7 투자 의사결정을 금융투자회사에 맡길 수는 없나요?

◉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금융투자회사와 정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투자의사결정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에 관한 제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운용경과 등 제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통해 일임자산의 운용내역을 확인 · 관리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일임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전제하에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그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 투자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보유한 경우

8 계좌를 개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엔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에 관련 계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특히,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 없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표시한 곳에 서명만 한다면, 사후에 금융투자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서류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 계좌개설은 반드시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계좌개설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는 명의를 빌려준 계좌명의인의 입장에서 당해 계좌에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1차적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 타인의 명의를 빌린 실제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명의로 투자되었음을 이용하여 횡령(배임)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는 삼가야 합니다.

◉ 또한, 거래인감이나 증권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거래인감 또는 증권카드의 부당이용 등으로 인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 영업직원의 투자권유를 받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기재항목인 투자목적, 본인의 재무상황, 소득상황,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경험 및 지식,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의존도 등 기재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통지(월간거래내역, 신용거래시 담보부족사실의 통보 등)를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 영업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CMA의 경우에도 투자권유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금융투자회사가 CMA 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MMF 또는 RP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자동매수하기 때문임)하므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담직원을 선정할 때에는 그 직원의 신분(성명, 소속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로부터는 어떠한 투자상담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무자격자에게 투자상담을 받고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에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9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유념하세요.

◉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영업직원이 제시하는 원금보장, 수익보장, 손실보전의 약속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전문가이므로 투자권유 내용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투자책임은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투자권유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 주식, 채권 등 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물론 거래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자료나 재무제표, 언론보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사분석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가능한 한 여러 금융투자회사의 자료를 살펴보고 조사분석보고서의 내용(투자등급, 목표주가 등)을 맹신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